

국토교통부공고 제2022-호

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

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라 '21년도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행정처분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붙임 2021년도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행정처분 내용 1부.

2022년 12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